

이천시통·리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3. 10. .

제 출 자 : 이 천 시 장

개정구분 : 부분개정

개정이유

- 2003. 5. 13일 경기도로부터 법정동·면간 경계변경이 승인이 되어 갈산동 일부 14필지 16,641㎡(현대아파트 및 설봉초등학교 일부) 및 증포동 일부 5필지 14,346㎡(설봉초등학교, 설봉중학교 일부)를 창전동으로, 신둔면 도암리 일부 64,836㎡를 송정동으로 통·리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경계변경 승인에 따라 현대아파트 203동이 창전동으로 편입됨에 따른 창전동 11통·반의 관할구역 조정 및 송정동 2통의 관할구역 조정

개정조례안 : 별첨

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서발취서 : 지방자치법 제4조

관계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이의사항 없음

- 입법예고기간 : 2003. 8. 14 ~ 9. 4.

기타 참고사항 : 법정동·면간 경계변경 승인 (경기도자치 13101-1883, '03.05.13)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통·리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이천시통·리·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2]의 창전동 제11통 및 송정동 제2통의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자치행정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	자치행정과장
	직위·성명	최 홍 기
	담당·팀장	시정담당
	직위·성명	서 성 원
	담 당 자	이 호 근
	성명·전화	(644-2109)

[별표 2]

통·리·반명칭 및 관할구역

읍면동	법정동	통명	반명	관할구역
창전동	창전동	제11통	1	49-1(현대㉠ 101동 101호~407호)
			2	49-1(현대㉠ 101동 501호~707호)
			3	49-1(현대㉠ 101동 801호~1007호)
			4	49-1(현대㉠ 102동 101호~411호)
			5	49-1(현대㉠ 102동 501호~811호)
			6	49-1(현대㉠ 102동 901호~1311호)
			7	1-1(현대㉠ 201동 101호~408호)
			8	1-1(현대㉠ 201동 501호~808호)
			9	1-1(현대㉠ 201동 901호~1507호)
			10	1-2(현대㉠ 202동 101호~406호)
			11	1-2(현대㉠ 202동 501호~806호)
			12	1-2(현대㉠ 202동 901호~1506호)
			13	1-2(현대㉠ 203동 101호~406호)
			14	1-2(현대㉠ 203동 501호~806호)
			15	1-2(현대㉠ 203동 901호~1404호)
증포동	송정동	제2통	1	46, 48, 49, 51, 52, 53, 55
			2	25, 28, 38, 41, 44, 114, 115, 116, 430~443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				개정안				
[별표2] 통·리·반명칭 및 관할구역					[별표2] 통·리·반명칭 및 관할구역				
읍면동	법정동	통명	반명	관할구역	읍면동	법정동	통명	반명	관할구역
창전동	창전동	제1통 ~ 제10통		(생략)	창전동	창전동	제1통 ~ 제10통		(현행과 같음)
		제11통	1	49-1(현대A) 101동 101호~417호)			제11통	1	49-1(현대A) 101동 101호~407호)
			2	49-1(현대A) 101동 501호~707호)				2	49-1(현대A) 101동 501호~707호)
			3	49-1(현대A) 101동 801호~1001호)				3	49-1(현대A) 101동 801호~1007호)
			4	49-1(현대A) 102동 101호~407호)				4	49-1(현대A) 102동 101호~411호)
			5	49-1(현대A) 102동 411호~810호)				5	49-1(현대A) 102동 501호~811호)
			6	49-1(현대A) 102동 811호~1010호)				6	49-1(현대A) 102동 901호~1311호)
			7	49-1(현대A) 102동 1011호~1310호)				7	1-1(현대A) 201동 101호~408호)
			8	산1-1(현대A) 201동 101호~407호)				8	1-1(현대A) 201동 501호~808호)
			9	산1-1(현대A) 201동 411호~810호)				9	1-1(현대A) 201동 901호~1507호)
			10	산1-1(현대A) 201동 811호~1110호)				10	1-2(현대A) 202동 101호~406호)
			11	산1-1(현대A) 201동 1111호~1407호)				11	1-2(현대A) 202동 501호~806호)
			12	산1-2(현대A) 202동 101호~310호)				12	1-2(현대A) 202동 901호~1506호)
			13	산1-2(현대A) 202동 311호~610호)				13	1-2(현대A) 203동 101호~406호)
			14	산1-2(현대A) 202동 611호~910호)				14	1-2(현대A) 203동 501호~806호)
			15	산1-2(현대A) 202동 210호~1300호)				15	1-2(현대A) 203동 901호~1404호)
		제12통 ~ 제14통		(생략)			제12통 ~ 제14통		(현행과 같음)
증포동	안흥동 ~ 송정동	제1통 ~ 제1통		(생략)	증포동	안흥동 ~ 송정동	제1통 ~ 제1통		(현행과 같음)
		제2통	1	46, 48, 49, 51, 52, 53, 55			제2통	1	46, 48, 49, 51, 52, 53, 55
			2	25, 28, 38, 41, 44, 114, 115, 116				2	25, 28, 38, 41, 44, 114, 115, 116, 430~443
증포동 ~ 관고동	송정동 ~ 사음동	제3통 ~ 제3통		(생략)	증포동 ~ 관고동	송정동 ~ 사음동	제3통 ~ 제3통		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서발취서

지방자치법 제4조

第4條 (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) ①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은 宗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地方自治團體를 廢置、分合할 때에는 法律로써 정하되, 市、郡 및 自治區의 管轄區域 境界變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②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를 廢置、分合하거나 그 名稱 또는 區域을 變更할 때에는 관계地方自治團體의 議會(이하 "地方議會"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第13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投票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1999.8.31>

③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、面、洞의 名稱과 區域은 宗전에 의하고,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、分合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 다만, 區域變更은 特別市長、廣域市長、道知事(이하 "市、道知事"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<개정 1999.8.31>

④리의 區域은 自然의 村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名稱과 區域은 宗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、分合할 때에는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

⑤ 洞、리에 있어서는 行政能率과 住民便宜를 위하여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洞、리를 2개이상의 洞、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洞、리를 하나의 洞、리로 운영하는등 行政運營上 洞、里(이하 "行政洞、里"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⑥第5項의 行政洞、리에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.